

전문가 인식 조사를 통한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종합건설업체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Evaluation System of the Contractor's
Construction Capacity through the Questionary Analysis and the In-Depth
Interview with Experts Group: Focused on the General Construction Company

김성연
Kim Seongyeun

감사연구원 연구관
Research Fellow, Audit and Inspection Research
Institute
(21cksy@naver.com)

목 차

I. 서론

II.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요 및 문제점

1.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요
2. 선행연구를 통한 시공능력평가제도 문제점

III. 실증분석

1. 개요
2. 설문조사 대상자의 특성
3. 건설업체 정보 제공에 대한 시공능력평가제도의 적정성 파악
4. 중소건설사 보호·육성을 위한 시공능력평가제도 기여도 파악
5. 소결

IV.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대안

1. 시공능력평가액 구성 세부항목 수시 공시로 전환
2. 시공능력평가제도 세부기준 변경 시 검증절차 마련
3. 중소건설사 기준 마련을 위해 시공능력평가액 산정기준 보완 및 활용

V. 결론

1. 연구 요약 및 제언
2. 향후 연구 방향

I. 서론

2012년 기준, 정부, 공기업 등 공공 부문이 건설사업에 지출하는 전체 사업비는 약 60.2조 원에 이른다. 도로·철도 등 SOC 건설, 산업단지, 택지개발 등 공공(公共) 건설공사는 국민의 삶에 직결되고 국가 경제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체에 대한 올바른 선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때, 시공능력평가제도(이하 시평제도)는 건설업체 정보를 발주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적절한 건설업체 선정이 가능하도록 활용되고 있다. 건설업체의 시공실적, 경영능력, 기술능력, 신인도를 화폐단위로 평가한 시공능력평가액(이하 시평액)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7월 말 기준으로 공시하고 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이하 「건설법」).

건설업체 선정을 위해 발주자가 시평제도를 활용하는 이유는 건설산업의 고유한 특성에 기인한다. 즉, 건설산업은 '선(先)주문 - 후(後)생산'의 특성으로 완성을 비교·선택하여 구매하는 타 산업과 다른 특징을 가진다. 또한, 건설공사는 일반적으로 발주금액이 크고 생산기간이 장기간 소요된다. 이에 따라 공기(工期) 미준수, 부실공사, 건설업체 부도 등 생산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발주자가 건설공사에 따른 위험 및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우수하고 능력 있는 건설업체 선정이 중요하다. 이에 시평제도가 건설업체 정보에 접근이 어려운 수요자(발주자)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건설 실무자와 학계를 중심으로 시평제도에 대한 무용론과 시평액의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는 것도 현실이다. 이에 본 논문은 건설산업 관련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종합화하여 현행 시평제도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논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문헌조사, 심층면접조사 및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우선, 과거 시평제도를 주제로 수행된 연구보고서 및 학술논문 등 문헌조사와 건설 관련 협회, 시민단체 및 언론 보도 자료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시평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유형화하였다. 그다음으로 문헌조사에서 파악한 시평제도 문제점의 현실 반영 정도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건설업체 종사자, 관련 분야 연구자 및 전문가, 부처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와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수행하였다. 특히,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조사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시평제도 문제점의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실증분석을 시도한 이유는 문헌조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관적 의견을 보완함으로써 연구의 객관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II.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요 및 문제점

1.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요

시평제도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건설업체의 시공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및 신인도를 기초로 시공능력을 평가·공시하는 제도다. 시평제도는 다음의 두 가지 이유에서 그 필요성을 가진다.

첫째, 시평제도의 중요한 목적은 발주자가 적절한 건설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건설법」 제23조 제1항)을 명시하고 있다. 여타의 산업과 달리 건설 공사는 장기간 생산기간으로 인해 공사 진행 중에 수많은 위험에 직면하게 되는데, 발주자 입장에서 목표한 공사를 적기에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 건설 공사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건설 공사를 직접 담당해야 하는 건설업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즉, 건설업체의 시공실적 및 기술능력

뿐만 아니라 경영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건설한 건설업체가 건설 공사를 담당할 경우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경감·축소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따라서 건설업체의 능력을 사전에 평가·고시하여 적절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발주자(또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필수적이다(김민형, 1999: 5). 또한, 개별 발주자가 건설공사에 적합한 건설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데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발주자가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평제도의 필요성은 일견 타당성이 있다.

둘째, 시평액을 활용하는 각종 계약 및 수주 방식을 살펴볼 때(〈표 1〉 참조), 시평제도는 중소기업 보호 및 육성이라는 목적을 내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대기업이 일정 규모 이하의 공공공사를 수주하지 못하게 하여 중소기업의 수주영역을 보호해주는 공사금액 도급하한 결정(「건설법」 제4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시평액을 토대로 입찰계약에 대한 제한 사항을 명시하는 제한경쟁입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이하 「국가계약법」)에 있어 기

준을 정립하는 데 직접 활용된다. 또한, 토목공사와 건축공사 규모에 따라 참여 건설사를 제한하는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작성(「국가계약법」 제22조)과 시공능력 상위 10개사 공동수급체 구성 금지(조달청 턴키 공사입찰 특별유역서 제8조 제4항) 등에 시평액이 활용됨으로써 대형 건설업체에 수주물량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중소기업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시평제도가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평제도에서 정하는 시평액은 건설업체가 시공할 수 있는 1건 공사의 공사 예정금액으로 규정하는데(「건설법」 시행규칙 별표1), 이는 해당 업체가 시공할 수 있는 1건 공사의 최대금액을 의미한다(대한건설정책연구원, 2008: 7). 시평액은 〈표 2〉와 같이 4개 평가항목을 단순 합산하여 산정한다.

2. 선행연구를 통한 시공능력평가제도 문제점

시평제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시평제도가 이론적, 학문적으로 정립된 개념이 아니라 실무적 관점에서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¹⁾ 또한, 「건설법」, 「국가계약법」 등 건설공사

표 1_ 시공능력평가제도 활용

구분	근거	시공능력평가액 적용
공사금액 도급하한 결정	「건설법」 제47조 제2항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0-939호	토건 시공능력평가액 1천억 원 이상 건설업자는 당해 업체 시공능력평가액 1/100에 해당하는 금액 공사 도급 금지
제한경쟁입찰 제한 기준	「국가계약법」 제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시공능력평가액을 토대로 제한경쟁 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 사항 명시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국가계약법」 제22조	시공능력평가액을 토대로 구성된 개별 등급별 토목공사와 건축공사 규모 규정
시공능력 상위 10개사 공동수급체 구성 금지	조달청 턴키 공사입찰 특별유역서 제8조 제4항	시공능력평가액기준 상위 10위 이내 업체 상호 간 공동수급체 구성 금지

자료: 김성연(2012: 45).

1) 시평제도의 효시는 1958년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체를 제한할 목적으로 마련한 '공사청부제한제도(당시 「건설업법」 제5조 제2항)'임. 이후 1961년 '공사도급제한제도', 1996년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로 전환되었음. 이러한 제도 변화의 주된 목적을 살펴보면, 시평제도가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건설공사에 진입하는 대형건설업체를 제한이 진행되어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표 2_ 시공능력평가액 산정식

평가 항목	평가 내용
공사실적평가액	• (산식) 최근 3년간 해당 업종의 연평균 건설공사실적 × 75/100
경영평가액	• (산식)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 75/100 - 실질자본금 = 총자산 - 총부채 - 경영평점 = (유동비율 평점 + 자기자본비율 평점 + 매출액 순이익률 평점 + 총자산 회전율평점) ÷ 4
기술능력평가액	• (산식) 기술능력생산액 + 퇴직공제불입금 × 10 + 최근 3년간의 기술개발 투자액 - 기술능력생산액 = 전년도 동종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 × 보유기술자수 × 30/100
신인도평가액	• (산식) 신인도 평점 × 최근 3년간 연평균 공사실적 - 신인도 평점은 신기술 지정, 협력관계 평가, 부도, 영업 정지, 부실 별점, 재해율, 국내 인력의 해외 건설현장 고용 여부, 허위신고 등을 감안하여 가·감산 - 다만, 요소별 신인도 평가액의 합계액은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25/100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주: 시공능력평가액 = 공사실적 평가액 + 경영 평가액 + 기술능력 평가액 + 신인도 평가액.

및 계약 관련 법률에 시평액을 적용토록 규정함으로써 시평제도를 무비판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심도 있는 논의가 발생할 여지도 없었다. 따라서 기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시평제도에 대한 학술적 논의보다는 실무적 활용에 있어 이해관계에 따른 문제 제기, 정부의 정책적 접근 및 시평액 산정에 대한 논의 등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제한적으로 진행되었을 뿐이다.

선행연구에서 제기하고 있는 시평제도의 문제점을 유형화하면, ① 건설업체에 대한 정보 제공의 한계와 ② 중소건설사 보호 및 육성의 한계로 구분된다(표 3) 참조.

①의 경우는 다시 ㉠ 건설업체 정보 제공의 적시성 결여와 ㉡ 건설업체 정보 왜곡 우려로 재분류된

다. ㉠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1년 주기(매년 7월 말)로 이뤄지는 시평액이 수시로 변화하는 건설업체의 실적과 경영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반영하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김민형, 1999;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05; 김성일, 2006). ㉡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시공능력 평가항목이 건설업체의 실질적인 시공능력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이질적인 평가항목을 금액기준으로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김성일, 2006; 이승복·배유진, 2012; 김성연, 2012). 특히, 경영평점 산정에 사용되는 재무비율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김민형, 1999;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4). 이밖에 시평액 산정에 있어 개별 항목별 가중

표 3_ 선행연구 결과 분석

구분		시평제도(액) 문제점
① 정보 제공 한계	㉠ 정보 제공 충실성 결여	• 1년 주기의 시평액 발표는 실시간 변화하는 건설업체의 정보 제공에 한계 표출
	㉡ 정보 왜곡 우려	• 이질적 평가항목 단순 합산은 실질적인 시공능력 반영 한계
		• 건설업체 경영평가에 있어 재무비율의 비적정성
		• 개별 항목별 가중치 결정 시 주관성 개입 우려
② 중소건설사 보호 및 육성 한계		• 시평액 산정 시 건설업체의 인적·물적 비용 과다 투입 • 중소건설사 보호를 위한 제한경쟁 축소 또는 폐지 추세로 시평액 활용 축소 우려 • 현행 시평제도는 중소건설사 경쟁력 제고 한계

치 결정에 자칫 이익단체의 주관성이 개입될 우려가 있어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심의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김성연, 2012).

②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시평액 산정을 위한 막대한 인적·물적 비용 투입에 비해 중소기업사를 위한 시평제도 활용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다(김민형, 1999; 김성일, 2006). 또한, 중소기업사 보호를 위한 제한경쟁이 점차 축소 내지는 폐지되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향후 도급하한 등에 따르는 인위적인 업역 제한의 한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김민형, 1999). 이 밖에도 시평액 중 시공실적과 경영능력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현행 시평제도에서는 중소기업사의 기술력 향상을 유도하는 데 한계(심인성, 2004;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05; 한국건설경영협회, 2012)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살펴본 시평제도에 대한 논란을 요약해보면, 시평액 산정 방법과 시평제도 활용에 따른 제반적인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문제 발생의 원인을 살펴보면, 시평제도가 건설업체의 정보를 즉시 반영하지 못하며, 제공되는 건설업체 정보가 왜곡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또한, 시평액을 반영한 중소기업사 보호를 위한 각종 정책 목적이 중소기업사의 경쟁력 향상을 유도하는 것인 바, 오히려 시평제도로 인해 경쟁력 향상보다는 현실에 안주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본 논문은 선행연구에서 지적된 시평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데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III. 실증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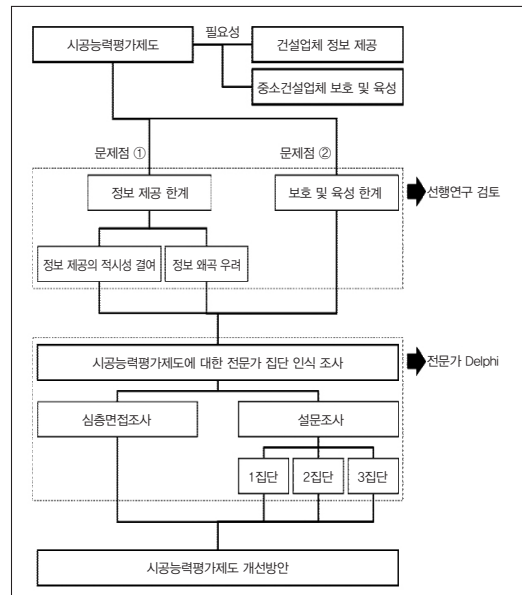
1. 개요

본 논문은 전문가 집단 인식 조사를 통해 시평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성적 분석 방법으로 심층면접 조사와 정량적 분석 방법인 전문가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수행함으로써 연구 결과에 대한 객관성을 제고하였다(〈그림 1〉 참조).

우선, 시평제도와 관련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건설업체 정보 제공 및 중소기업사 보호·육성의 한계점을 살펴보았다. 특히, 건설업체 정보 제공 한계점은 정보 제공의 적시성 결여와 정보 왜곡 우려로 구분하였다.

도출된 시평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심층면접조사와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심층면접조사는 2012년 4월부터 약 2개월간 연구원 5인, 건설사, 공기업 및 협회 임직

그림 1 _ 연구분석 틀



원 12인, 공무원 3인 등 총 20인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여 직접 대면조사를 통해 진행하였다. 심층면접조사는 현행 시평제도에 대한 의견, 응답자가 소속된 기관 및 기업에서 시평제도 활용 여부 및 시평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청취하였다. 이후 2012년 6월 18일부터 7월 27일까지 1개월 여에 걸쳐 실시한 전문가 설문조사는 시평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관련 분야 연구원, 협회 및 공기업 직원, 공무원, 건설사 임직원 등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실시하였다. 특히, 사전에 실시된 심층면접조사에서 나타난 시평제도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라고 판단되는 건설사 임직원은 당해 건설업체 시평액 기준 1등급 중 상위 30여 건설사(이하 1집단)와 시평액 기준 2등급 이하 건설사(이하 2집단)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²⁾ 나머지 집단(이하 3집단)은 시평제도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적다고 판단되는 대상으로 주로 연구원, 협회 및 공기업 임직원, 공무원 등이 포함되었다.

설문조사는 시평제도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 집단인 1집단에 30부, 2집단에 250부를 e-mail를 통해 배포하였는데, 1집단은 19부(회수율 63.3%), 2집단은 13부(회수율 5.2%)가 회수되었다. 3집단의 경우 총 20부를 배포하여 12부(회수율 60.0%)를 회수함으로써 앞서 회수된 1, 2집단의 설문을 합하여 총 44부를 통계분석에 활용하였다. 설문 문항별 응답은 7점 리커트척도를 적용하였으며, 분석 방법은 빈도 분석, 교차분석 및 분산분석을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집단의 인식 조사 결과를 토대

로 시평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2. 설문조사 대상자의 특성

설문조사 대상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이때, 설문조사 대상자에 대한 특성을 살펴보는 이유는 설문조사 집단에 대한 전문성을 확인하고 시평제도 개선 등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설문 응답에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사 대상자의 최종 학력은 전체 응답의 97.7%가 대졸 이상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조사 대상자를 구분해보면, 건설사에서 시평제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응답자는 대부분 대학교(학사) 졸업의 학력인 반면, 연구원 종사자는 대학원(석사, 박사)의 학력을 보유하고 있다.

조사 대상자의 전공 분야는 경제학, 경영학, 행정학 등 사회과학 분야가 40.9%(18명)로 가장 많고, 토목학, 건축학 등 공학 분야 34.1%(15명), 법학 13.6%(6명), 인문학 6.8%(3명)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본 설문에 응답한 대상자의 소속기관을 살펴보면, 건설사에 종사하는 응답자가 전체 응답의 72.8%(32명)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연구기관 9.1%(4명), 공기업 및 협회가 각각 6.8%(3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의 시평제도 인지 정도를 예측해보기 위해 조사 대상자의 직위와 시평제도 관련 업무 수행 기간을 살펴보았다. 우선, 설문 응답자의 대부분은 시평제도와 관련된 업무수행 기간 5년 이상(79.1%, 34명)인 중간관리자 이상(86.1%, 37명)으로 시평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집단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2) 본 논문에서 1집단과 2집단을 구분한 이유는 전문가 심층면접조사 결과, 대형건설업체와 중소형건설업체 간 시평제도에 대한 의견의 차이가 발생하였음. 이에 설문조사 대상 표본 수를 비슷하게 맞추기 위하여 건설업체를 두 개 집단으로 구분하였음. 통상적으로 대형건설업체와 중소형건설업체를 구분하는 기준이 해당 건설업체가 시평순위 1등급(유자격자명부 기준)에 포함되는지 여부로 구분하고 있음. 따라서 시평제도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라고 판단한 건설업체의 구분을 시평액 기준 1등급을 기준으로 구분하였고, 1등급 건설사 설문조사는 한국건설경영협회의 도움을 받았으며, 1등급 외 건설사 설문조사는 대한건설협회에서 협조하였음.

표 4_ 조사 대상자 현황

구분	항목	빈도(명)	비율(%)	구분	항목	빈도(명)	비율(%)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	1	2.3	현재 직위 ²⁾	임원	6	13.9
	대학교(학사) 졸업	36	81.8		중간관리자	31	72.2
	대학원(석사) 졸업	4	9.1		실무담당자	6	13.9
	대학원(박사) 졸업	3	6.8		합계 ³⁾	43	100.0
	합계	44	100.0		시평 제도 관련 업무 수행 기간	1년 이하	2
전공 분야	사회과학	18	40.9	1년 초과~5년 이하		7	16.3
	공학	15	34.1	5년 초과~10년 이하		13	30.3
	법학	6	13.6	10년 초과~20년 이하		19	44.2
	인문학	3	6.8	20년 초과		2	4.6
	기타	2	4.6	합계 ³⁾		43	100
	합계	44	100.0	시평 제도 인지 정도 ⁴⁾	보통 ⁴⁾	2	4.5
현재 근무처	건설사(1등급) ¹⁾	19	43.2		조금 알고 있음 ⁵⁾	12	27.3
	건설사(1등급 외)	13	29.6		잘 알고 있음 ⁶⁾	15	34.1
	연구원	4	9.1		매우 잘 알고 있음 ⁷⁾	15	34.1
	공기업	3	6.8		합계	44	100
	협회	3	6.8	대상 집단 ⁵⁾	1집단	19	43.2
	기타	2	4.5		2집단	13	29.5
합계	44	100.0	3집단		12	27.3	
			합계		44	100.0	

주: 1) 2011년 조달청 유자격자명부 1등급에 포함되는 건설업체.
 2) 직위 구분: 임원(대표, 이사, 실장), 중간관리자(부장, 차장, 팀장, 과장, 연구위원), 실무담당자(대리, 사원, 계약직 직원)
 3) 결측값(1명) 분석에서 제외.
 4) 조사 대상자의 시공능력평가제도에 대한 인지 정도를 조사하는 설문 문항의 응답은 7점 리커트척도(①은 전혀 모름, ④ 보통, ⑦ 매우 잘 알고 있음)로 구성되었는데, 본 문항에서는 ①부터 ③까지의 응답이 없음.
 5) 1집단은 조달청 유자격자명부 기준 1등급 건설업체 임직원, 2집단은 동 명부 2등급 이하 건설업체 임직원, 3집단은 연구원, 협회 및 공기업 임직원, 공무원 등으로 구분.

또한, 조사 대상자의 시평제도에 대한 인지 정도를 살펴보면, ‘보통’이라고 응답한 2명(4.5%)을 제외하고 전체 응답자의 95.5%(42명)는 시평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평제도와 관련된 업무를 최소 5년 이상 수행한 중간관리자와 임원이 설문에서 주로 응답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활용하는 설문조사 결과는 현행 시평제도에 대하여 높은 수준의 인식을 토대로 조사되어 자료의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된다.

3. 건설업체 정보 제공에 대한 시공능력평가제도의 적정성 파악

「건설법」에서 규정한 시평제도의 주된 목적은 발주자에게 건설업체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건설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risk)에서 발주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에 현행 시평제도와 건설업체의 정보 제공 간 관계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보통’ 이하의 응답을 보임으로써 부정적인 견해로 나타났다(M=3.93, S=1.62, <표 5> 참조).

하지만, 시평제도의 정보 제공 여부에 대하여 응답

표 5_ 시평제도를 통해 건설업체의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는지 여부

구분 \ 설문 항목	합계	매우 불충분 ①	②	③	보통 ④	⑤	⑥	매우 충분 ⑦
빈도(명)	44	2	10	5	9	9	8	1
비율(%)	100.0	4.5	22.7	11.4	20.5	20.5	18.1	2.3
평균 / 표준편차	3.93 / 1.62							

주: F = 2.829, p < 0.10

표 6_ 시평제도를 통한 건설업체의 정보 제공 여부에 대하여 집단별 비교

구분 \ 집단	1집단	2집단	3집단
표본 수(명)	19	13	12
평균	3.37	4.77	3.92
표준편차	1.54	1.24	1.83

주: F = 3.181, p < 0.10

한 집단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표 6〉 참조). 즉, 1집단(M=3.37)과 3집단(M=3.92)은 건설업체에 대한 정보 제공이라는 본래 목적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인식한 반면, 2집단(M=4.77)은 정보 제공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II-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발주자에게 제공하는 건설업체의 정보를 신뢰할 수 없는 이유가 현행 시평액 산정식에 대한 논란이다. 이에 대하여 현행 공사 실적, 경영평가, 기술능력 및 신인도로 구성되는 시평액 산정식이 적정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통(M=4.07)’이라는 긍정적인 응답 결과가 나타났다(〈표 7〉 참조). 하지만, 집단별로 살펴보면, 시평제도를 보는 시각의 차이가 극명하게 발생하

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표 8〉 참조). 즉, 1집단(M=3.53)은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반면, 2집단(M=4.92)은 오히려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하였으며, 3집단(M=4.00)은 중립적인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시평제도의 정보 제공과 시평액 산정기준 적정성 간에는 정(+)의 관계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시평제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1집단은 시평액 산정기준도 적정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반면, 시평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2집단은 시평액 산정기준도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표 9〉 참조). 반면, 3집단은 시평제도 정보제공 및 시평액 산정기준에 대해서 중립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_ 시평액 산정기준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집단별 비교

구분 \ 집단	1집단	2집단	3집단
표본 수(명)	19	13	12
평균	3.53	4.92	4.00
표준편차	1.58	1.38	1.95

주: F = 3.181, p < 0.10

표 7_ 시평액 산정기준의 적정성

구분 \ 설문 항목	합계	매우 부정적 ①	②	③	보통 ④	⑤	⑥	매우 적정 ⑦
빈도(명)	44	4	5	7	10	5	12	1
비율(%)	100.0	11.4	11.4	15.9	22.7	11.4	27.2	2.3
평균 / 표준편차	4.07 / 1.70							

주: F = 2.829, p < 0.10

표 9_ 시평제도 정보 제공 및 시평액 산정기준 간 적정성 비교¹⁾

(단위: 명, %)

구분	시평제도 정보 제공의 적정성 ²⁾							합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시평액 산정 기준의 적정성 ³⁾	①	2(4.5)	2(4.5)	-	-	-	-	-	4(9.1)
	②	-	5(11.4)	-	-	-	-	-	5(11.4)
	③	-	2(4.5)	3(6.8)	1(2.3)	1(2.3)	-	-	7(15.9)
	④	-	1(2.3)	1(2.3)	6(13.6)	2(4.5)	-	-	10(22.7)
	⑤	-	-	1(2.3)	1(2.3)	2(4.5)	1(2.3)	-	5(11.4)
	⑥	-	-	-	1(2.3)	4(9.1)	7(15.9)	-	12(27.3)
	⑦	-	-	-	-	-	-	1(2.3)	1(2.3)
합계	2(4.5)	10(22.7)	5(11.4)	9(20.5)	9(20.5)	8(18.2)	1(2.3)	44(100.0)	

주: 1) 통계적 유의미성 검증. $\chi^2 = 121.634(df = 36, p < 0.01)$.
 2) 7점 척도(① 매우 불충분, ④ 보통, ⑦ 매우 충분)로 구분.
 3) 7점 척도(① 매우 부적절, ④ 보통, ⑦ 매우 적절)로 구분.

표 10_ 시평제도가 중소기업사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지 여부

구분 \ 설문 항목	합계	매우 불충분 ①	②	③	보통 ④	⑤	⑥	매우 충분 ⑦
빈도(명)	44	3	5	4	9	11	11	1
비율(%)	100.0	6.7	11.4	9.1	20.5	25.0	25.0	2.3
평균 / 표준편차	4.30 / 1.61							

주: $F = 2.829, p < 0.10$

4. 중소기업사 보호·육성을 위한 시공능력평가제도 기여도 파악

전문가들은 시평제도가 중소기업사 보호 및 육성에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표 10〉 참조). 이와 함께 시평제도가 중소기업사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역할 수행 여부에 대해서는 각 집단(1 집단, 2 집단, 3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없이 긍정적인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였다(〈표 11〉 참조). 이러한 결과는 시평액이 등급별 유자격자명부(「국가계약법」 제22조) 운영 등 입찰참가자 자격 기준과 시공능력 상위 10개사 공동수급체 구성 금지 등 실제 적용되는 데 기인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표 11_ 시평제도가 중소기업사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역할 수행 여부에 대한 집단별 비교

구분 \ 집단	1 집단	2 집단	3 집단
표본 수(명)	19	13	12
평균	4.16	4.77	4.00
표준편차	1.54	1.83	1.48

주: 3개 집단 간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음.

5.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시평제도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인식을 정리해 보면, 〈표 12〉와 같다.

우선, 시평제도가 발주자에게 건설업체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하게 제공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전문가

표 12_ 시평제도에 대한 전문가 인식 조사 결과

시평제도에 대한 질문	전문가 전체 응답 결과(M, S)	전문가 집단 간 인식 차이
①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는지 여부	부정적 성향 (3.93, 1.62)	1집단(정보 제공에 부정적 성향), 2집단(정보 제공에 긍정적 성향), 3집단(정보 제공에 부정적 성향)
② 정보 왜곡 여부	긍정적 성향 (4.07, 1.70)	1집단(정보 왜곡에 동의하는 성향), 2집단(정보 왜곡을 부정하는 성향), 3집단(중립 성향)
② 중소건설사 보호·육성 여부	긍정적 성향 (4.30, 1.61)	집단 간 인식 차이 없음 (1, 2, 3집단 중소건설사 보호·육성 효과 인정)

집단은 다소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보 제공에 대한 전문가 집단 간 차이를 간과할 수 없는데, 1집단과 3집단은 시평제도의 정보 제공에 대해 부정적인 반면, 2집단은 정보 제공에 있어 긍정적인 성향을 보이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둘째, 시평액 산정기준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보통’ 이상의 응답으로 조사되었다. 본 설문에 대해서도 1집단은 부정적인 반면, 2집단은 긍정적인 답변을 함으로써 두 집단 간 인식의 차이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렇듯 시평제도의 정보 제공에 있어 특히, 1집단과 2집단 간 인식 차이가 상반되게 나타나는 이유는 시평제도가 건설사의 운영 등에 기여하는 실익에 차이가 발생함에 원인이 있는데, 이는 심층면접조사 결과³⁾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적신고에 소요되는 투입비용을 산출해 보면, 기성실적증명 발급, 실적집계 및 서류작성, 협회비용 산출, 보완서류 작성 및 집계 등 총 566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각 건설업체는 시평액 산정을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정작 시평액을 기업이 활용하는 것은 아

파트 분양 시 홍보에 활용하는 정도며, 무엇보다도 시간과 비용을 통해 산출된 시평액을 과연 믿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시평제도의 가장 큰 한계점이다.”

- 시평액 순위 10위 이내 B건설사 담당자 심층면접 (2012. 4)

“중소기업은 시평액 준비를 위해 시간이 많이 필요하진 않다. 다만, 시평액이 추후 조달청 유자격자명부 작성에 필요하고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경쟁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제한경쟁에 한정된 수주에 전념해야 한다. 결국, 제한경쟁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시평제도는 존속되어야 한다. 그리고 시평제도는 정부가 하는 일인데, 자료 내용을 믿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시평액 순위 600위 이내 C건설사 임원 심층면접 (2012. 5)

“1950년대 말부터 현재까지 내려오는 시평제도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나름 많은 부분이 보완되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시평액

3)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결과의 해석을 위해 전문가 심층면접조사 결과를 활용하였음. 이는 연구자의 주관성을 배제하기 위함임. 본 논문에서 소개되는 사례는 시평제도에 관한 심층면접조사 결과를 대표할 수 있다고 판단된 사례를 선택하여 제시하였으며, 면접조사에 응한 대상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무기명으로 처리하였음.

이 1건 공사의 최고액이라는 개념과 이질적 항목의 단순 합산 등에 대한 논란 등은 여전히 시평제도가 풀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 D연구원 연구위원 심층면접(2012. 5)

또한, 시평제도가 중소기업사 보호·육성에 역할을 수행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긍정적으로 판단하였다. 이는 중소기업사 보호·육성을 위한 각종 제도에서 시평액을 직접 활용하는 데 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이는 시평액 활용에 초점이 맞춰졌을 뿐, 중소기업업체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시평액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요구된다.

“사실 시평제도가 중소기업업체를 보호하고 육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시평액은 1년 동안 해당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을 수치화함으로써 법에도 명기된 것처럼 건설사의 정보를 발주자 또는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평액이 중소기업업체 보호 및 육성을 위한 각종 제도 또는 정책(조달청 유자격자명부제도가 대표적)에 기준이 되고 해당 법률에서 시평액 적용을 명문화하였기 때문에 중소기업업체를 보호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 E연구원 연구위원 심층면접(2012. 5)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2조(공사의 성질별·규모별 제한에 의한 입찰)를 근거로 공사를 성질별·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이에 상응하는 경쟁제한기준을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공종별 유자격자명부다. 유자격자명부는 대형건설업체 수주독점 방지 및 중소기업업체의 수주기회 확보를 위해 작성되고 있는데, 시공능

력평가액 증가율 또는 지역제한 상한금액 변경 등을 감안하여 매년 조정하고 있다. 등급을 정할 때, 난이도가 낮은 공사에 발주되는 등급별 제한경쟁을 통해 중소기업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관계 공무원 심층면접(2012. 5)

IV.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대안

전술한 바와 같이 현행 시평제도의 문제점은 건설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소기업사를 보호 및 육성에 한계점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시평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1. 시공능력평가액 구성 세부항목 수시 공시로 전환

현재 시평제도는 5개 분야(토건, 토목, 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별로 시평액 산정 시 건설업체의 개별 요인(건설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을 합산하여 금액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서로 상이한 요소를 화폐 단위로 변경하고 단순 합산하는 현행 시평액 산정 방식은 건설사의 정확한 정보 제공에 한계점으로 작용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1년마다 제공되는 건설사에 대한 정보는 수시로 변화하고 있는 건설사의 상태를 수용하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발주자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시평제도가 건설사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발주자가 필요한 정보를 수시로 공시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즉, 시평액 산정을 위한 서로 상이한 세부요인을 합산할 것이 아니라 세부요인을 개별적으로 공시함으로써 발주자가 원하는 정보만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 집단의 의견도 세부 항목별 자료 수시 공시에 대하여 긍정적인 성향(M=4.41, S=1.93)으로 조사되었다(〈표 13〉 참조).

이처럼 시평액을 구성하는 세부요인이 개별공시될 때, 발주자는 시공능력이 우월한 건설업체를 선정할지, 재무상태가 우월한 건설업체를 선정할지 등을 판단하여 발주자의 재량에 의한 건설업체 선택이 가능하게 된다.

건설사 정보의 실시간 공시를 위해서는 별도의 전산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이하 KISCON)⁴⁾ 활용을 통해 가능하며, 추후 시평제도를 동 시스템으로 대체도 고려해볼 직하다. KISCON은 건설공사 실적 등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며, 전문가 집단의 의견도 '보통' 수준 이상의 긍정적인 응답을 제시하였다(〈표 14〉 참조).

2. 시공능력평가제도 세부기준 변경 시 검증절차 마련

〈표 3〉의 ①-㉔에서 제기한 시평액 산정 시 세부기준 변경에 있어 주관성 개입 여지를 사전에 방지하고 시평액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는 시평액 산정기준 변경에 있어 객관적이고 투명한 변경 절차가 필요하다. 즉, 1996년 도입된 시평제도가 2010년까지 6차례 수정되는 가운데 주로 WTO, IMF 등 대외환경과 업계의 변경 요구에 맞춰 진행됐는데, 현행 시평액 산정기준 변경에 대한 합리적인 절차의 부재로 건설업체 간 불신이 지속되었다(김성연, 2012: 84). 또한, 시평액 산정기준 변경으로 인하여 순위가 바뀌는 경우 건설업체 간 불필요한 경쟁심리를 유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이승복·배유진, 2012: 34).

따라서 시평액 산정에 있어 개별 항목 또는 항목별 가중치 결정 등이 형식적으로 진행될 우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가칭)시공

표 13_ 시평액 정기 공시가 아닌 세부항목별 자료 수시 공시에 대한 의견

구분 \ 설문 항목	합계	매우 부정적 ①	②	③	보통 ④	⑤	⑥	매우 긍정적 ⑦
빈도(명)	44	2	8	5	8	7	4	10
비율(%)	100.0	4.5	18.2	11.4	18.2	15.9	9.1	22.7
평균 / 표준편차	4.41 / 1.93							

표 14_ 시평제도의 KISCON 대체 활용 여부에 대한 의견

구분 \ 설문 항목	합계	대체 불가 ①	②	③	보통 ④	⑤	⑥	대체 가능 ⑦
빈도(명)	44	2	5	7	16	2	3	9
비율(%)	100.0	4.5	11.4	15.9	36.4	4.5	6.8	20.5
평균 / 표준편차	4.27 / 1.78							

4) KISCON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산업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건설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한 「건설법」 제24조 제3항에 법률적 근거를 두고 있음. KISCON은 「건설산업DB 구축사업」의 추진 결과로 구축된 건설산업 정보의 원활한 유통·활용을 위해 개발된 시스템이며 각 세부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총칭하는 명칭임. 시스템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kiscon.net/>) 참고.

능력평가액 산정기준심의회'를 구성하고 심의토록 함으로써 시평액 항목 또는 항목별 가중치 변경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그림 2) 참조).

이에 '(가칭)시공능력평가액 산정기준심의회' 설치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견해는 '보통' 수준 이상으로 심의회 설치에 긍정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표 15〉 참조, M=4.45, S=1.87). 이는 전문가들도 시평제도와 관련한 기준 변경에 있어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3자의 폭넓은 참여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중소건설사 기준 마련을 위해 시공능력평가액 산정기준 보완 및 활용

〈표 3〉의 ②에서는 시평제도가 중소건설사 보호·육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다만, 중소건설사를 위한 시평제도의 활용이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과 중소건설사 보호를 위한 경쟁이 점차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중소건설사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시평제도가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중소건설사를 별도로 보호 및 육성하는 정책이 필요한 이유는 중소건설사와 대형건설사 간 직접 경쟁이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소건설사를 보호 및 육성함으로써 소형건설사가 중형건설사로 발전하고 중형건설사가 대형건설사로 성장함으로써 건설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책 대상이 되는 중소건설사에 대한 명확한 범위 설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2011년 기준으로 종합건설업체는 총 1만 3,387개사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 중 약 1만 839개사(81.0%)가 시평액 산정에 참여하고 있다. 하

지만, 시평제도를 통해 보호 및 육성하고자 하는 중소건설사의 범위에 대해서는 언급되고 있지 않다. 다만, 「건설법」에서 건설기술자 11명 이상(토목·건축 분야 중급기술자 이상 4인 포함) 법인 자본금 12억 원 이상이면 건설업(토목건축공사업 기준)의 등록이 가능하다고 명기될 뿐이다. 이는 실제 중

그림 2_ 시공능력평가액 산정기준심의회 구성(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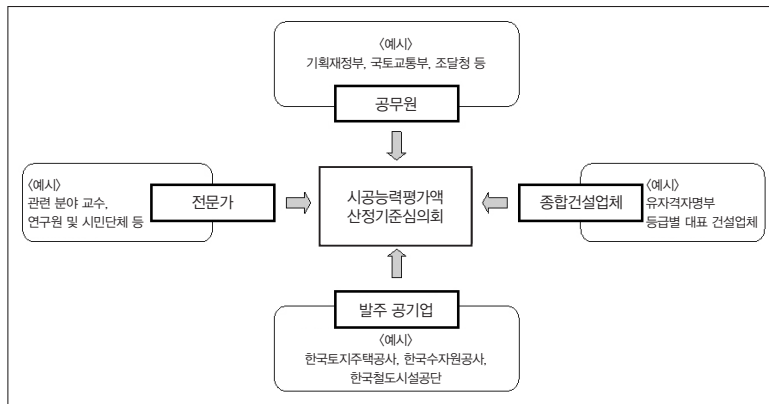


표 15_ 시공능력평가 기준 변경 시 별도 절차^{주)} 필요성 여부

구분 \ 설문 항목	합계	전혀 불필요 ①	②	③	보통 ④	⑤	⑥	매우 필요 ⑦
빈도(명)	44	4	4	5	8	8	8	7
비율(%)	100.0	9.1	9.1	11.3	18.2	18.2	18.2	15.9
평균 / 표준편차		4.27 / 1.78						

주: '별도 절차'란 (가칭)시평액 산정기준심의회 심의를 추가하는 것을 의미함.

소건설사 평균 종업원 수 31.3명(2010년 기준)이며, 50명 미만의 소기업의 비중이 전체의 95.6%를 차지하고 실정(권오현, 2012: 6)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 건설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때, 시평액 산정기준인 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및 신인도를 토대로 중소기업 건설사 기준을 정할 수 있다.

특히, 현행 시평액이 단순히 금액으로 환산하여 순위를 공개하는 문제점은 전문 분야로 특화된 중소기업 건설업체를 저평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 따라서 전문 분야로 평가할 수 있는 도로, 교량, 항만, 지하철, 상하수도, 초고층 빌딩 및 아파트, 폐수 및 폐기물 처리시설 등 세분화된 분야별로 중소기업 건설사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대안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⁵⁾

V. 결론

1. 연구 요약 및 제언

본 논문의 목적은 시평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에 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시평제도의 문제점을 정보 제공의 한계와 중소기업사 보호 및 육성의 한계로 유형화하였다. 특히, 시평제도의 정보 제공 한계점은 정보 제공의 충실성 결여와 정보 왜곡의 우려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에 관해서 심층면접조사와 설문조사를 통해 전문가 집단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① 시평제도를 통해 건설업체의 정보가 충분히 적시에 제공되는지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은 ‘보통’ 이하의 응답을 보임으로써 부정적 성향으로

나타났다($M=3.93, S=1.62$). ② 시평제도의 왜곡된 정보와 관련 있는 시평액 산정기준의 적정성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은 ‘보통’ 이상으로 적정성에 대해 긍정적 성향의 의견을 제시하였다($M=4.07, S=1.70$). 하지만, 시평제도의 정보 제공 한계에 대해서 집단 간 의견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시평제도의 정보 제공과 시평액 산정기준 적정성 간에 정(+)의 관계가 나타났다. 특히, 1집단은 시평제도의 정보 제공과 시평액 산정기준 적정성 항목 모두 부정적 성향으로 인식한 반면, 2집단은 앞선 두 항목 모두 긍정적 성향으로 인식하였다. 반면, 3집단은 두 항목 모두 중립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집단 간 인식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시평제도가 건설사의 운영 등에 기여하는 실익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③ 시평제도가 중소기업 건설사의 보호 및 육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 모두 긍정적 성향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였다($M=4.30, S=1.61$). 이는 중소기업사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정책 또는 제도에서 시평액을 직접 활용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시평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첫째, 시평액을 구성하는 세부항목을 수시로 공시해야 한다. 이는 시평액 산정 시 상이한 요인을 화폐단위로 단순 합산에 따른 폐단을 시정함과 아울러 1년마다 제공되는 건설업체 정보가 수시로 변화하는 건설사에 대한 정보 왜곡을 방지할 수 있다. 시평액 수시 공시를 위한 시스템은 국토교통부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KISCON을 대안으로 제안하였다. 둘째, 시평액 산정 기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문가로 구성된 ‘(가칭)시공능력평가액 산정기준심의회’의 설치를 제안하였다. 이는 시평액 산정에 중요한 개별 항목별 가중치 결정 등

5) 다만, 「중소기업법」상 정의와 관련하여 실제 범위를 어떻게 명확화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또는 예시를 들지 못한 점은 본 논문의 한계점으로 밝혀 둬.

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셋째, 시평제도가 중소건설사 기준 마련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평액 산정을 위해 고려되는 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및 신인도 등을 활용하는 방안과 전문 분야로 특화된 중소건설업체를 별도로 구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책 대상을 명확한 설정하는 이유는 중소건설사 보호 및 육성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건설업계 임직원 및 학계를 중심으로 시평제도에 대한 무용론 또는 시평액의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은 시평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유형화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데 학문적 의의를 가진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이 시평제도에 대하여 학계, 실무자 및 연구자 간 깊이 있는 토론의 단초를 제공하기를 기대해 본다.

2. 향후 연구 방향

본 논문은 시평제도의 주된 목적인 정보 제공에 대한 한계점의 극복을 위해 KISCON 활용을 대안으로 제안하였으며, 전문가의 견해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행 KISCON이 가지고 있는 ① 건설공사 신고율 제고, ② 공사실적에 대한 검증, ③ 수요자 중심으로 KISCON 시스템 전환, ④ 복합 및 동일업종 공사 실적 확인, ⑤ 하도급의 기성실적 분개 어려움, ⑥ 「건설법」 이외의 업종 기성실적신고 문제, ⑦ 민간 부문의 해외 공사실적의 KISCON 등록 한계, ⑧ 건설업체의 경영상태, 기술인력 등 정보 제공 미반영 개선작업 등의 광범위한 문제점에 관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시평제도 활용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영국에서 건설업체의 사전자격 인증제도 및 사전자격인정 사업체의 등록명부 데이터베이스 기능을 가지는 Construction-on-Line의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때, 영국의 Construction-on-Line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시평제도가 건설업체 정보 제공의 정확성 및 적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05. “성명서-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공시제도 폐지 촉구”. 보도자료 8월 1일자.

권오현. 2012. 중소 건설업체 경영실태 분석 및 시사점. 서울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민형. 1999.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제도의 개선방향과 추진과제. 서울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성연. 2012. 시공능력평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서울 : 감사연구원.

김성일. 2006. “시공능력 평가제도의 주요 문제 및 개선방향”. 건설경제 통권47권, pp28-35.

대한건설정책연구원. 2008. 건설공사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 방안 연구. 서울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심인성. 2004. “현대건설,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 건의”. 한국경제, 3월 10일자.

이승복·배유진. 2012.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경기 : 국토연구원.

한국건설경영협회. 2012. (내부 보고자료)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제도 검토 의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4. (내부 보고자료)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

법제처(<http://www.moleg.go.kr>)

- 논문 접수일: 2013. 3. 18
- 심사 시작일: 2013. 4. 18
- 심사 완료일: 2013. 6. 10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Evaluation System of the Contractor's Construction Capacity through the Questionary Analysis and the In-Depth Interview with Experts Group: Focused on the General Construction Company

Keywords: Evaluation System of the Contractor's Construction Capacity, General Construction Compan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blems of the Evaluation System of the Contractor's Construction Capacity (ESCCC) and suggest some efficient improvements of it.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this study reviews preceding research and categorizes the problems of ESCCC as the lack of relevance in providing information, the concern for possible information distortion and the limit in protecting and promoting Small and Medium Construction Company (SMCC). Depths interviews and surveys are carried out to examine the understanding of expert group on these problems. According to the results, they answered the ESCCC does not provide sufficient information of construction firms relevantly. They also showed positive stance on the appropriateness of the criteria in assessing the Evaluation Amount of the Contractor's Construction Capacity (EACCC) and the effect of the ESCCC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SMCC. However, the expert group was divided apparently in terms of providing information by the ESCCC. In order to improve the on-going ESCCC, this study proposes that specifications consisting the EACCC be changed into public announcement on a rolling basis and qualification procedures in case of revising detailed creiteria be established. Furthermore it is suggested that the policy object be selected clearly through the ESCCC to protect and promote the SMCC.

전문가 인식 조사를 통한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 종합건설업체를 중심으로

주제어: 시공능력평가제도, 종합건설업체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시평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함에 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시평제도의 문제점으로 정보 제공의 적시성 결여, 정보 왜곡 우려와 중소기업사 보호 및 육성의 한계로 유형화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의 인식을 심층면접조사와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한 결과, ① 시평제도가 건설업체의 정보를 충분히 적시에 제공되고 있지 않다는 응답과 함께 ② 시평액 산정기준의 적정성과 ③ 시평제도가 중소기업사의 보호 및 육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시평제도의 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 간 의견의 차이가 명백하게 발생하였다. 현재의 시평제도가 보다 개선되기 위해서는 본 논문은 ① 시평액을 구성하는 세부항목을 수시 공시로 전환함과 동시에 ② 세부기준 변경 시 검증절차의 신설을 제안하였다. 또한, ③ 중소기업사 보호 및 육성을 위해서는 시평제도를 통한 명확한 정책 대상의 선정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